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 목 차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3

제1관 보험금의 지급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3
제2조【보험금의 청구】..... 3
제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3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3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

제5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3
제6조【피보험자의 범위】..... 4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4

제3관 보험료의 납입 4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4

제4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4
제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5
제10조【해지환급금】..... 5

제5관 기타사항 5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
제12조【특약약관 및 보험료율의 적용】..... 6
제13조【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6
(별표 1) 연금지급기준표 7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3조 제2항 관련)..... 9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참조)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연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연금개시 이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table>
<tr><td colspan="3">연금지급형태</td></tr>
<tr><td rowspan="2">종신연금형</td><td>보증기간부
(보증지급기간:10년/20년)</td><td>정액형
체증형(5%/10%, 10년간 체증)</td></tr>
<tr><td colspan="2">보증금액부</td></tr>
<tr><td colspan="2" rowspan="2">확정연금형(10년/15년/20년)</td><td>정액형
체증형(5%/10%, 10년간 체증)</td></tr>
<tr><td colspan="3">상속연금형</td></tr>
</table>

③ 제6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6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고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입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전환일시금)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산출 기준 및 방법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제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연금 및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및 금융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0.5%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외부지표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최저한도 설명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 0.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연 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0.5%)로 적립됩니다.

제12조【특약약관 및 보험료율의 적용】

이 특약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은 특약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며, 특약 전환 당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이 연금인 경우 이 특약의 연금사망률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합니다.

제13조【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적립액의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연금지급기준표

□ 연금(제1조)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상속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1.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2.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과 확정연금형에서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라 함은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 특약으로 납입(전환)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9. 이 특약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은 특약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며, 특약 전환 당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이 연금인 경우 이 특약의 연금사망률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3조 제2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기 간</th><th>지 급 이 자</th></tr>
<tr><td rowspan="3">연금
(제1조)</td><td rowspan="2">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td><td>공시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td><td>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 + 1.5%)</td></tr>
<tr><td rowspan="2">해지환급금
(제10조 제1항)</td><td colspan="2">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 + 1.5%)</td></tr>
</table>

㈜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